

1	2024 년도 교토시 생활응원급부금(비과세·균등할만 과세) 신청서 겸 청구서
2	1.신청자 세대에 해당하는 급부금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2024년도 새로 비과세가 된 세대를 위한 급부금(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2024년도 새로 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를 위한 급부금(2024년도 주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3	성명
4	개인번호·생년월일
5	현주소
6	수취계좌(②의 신청·청구자 계좌가 원칙)
7	대리인
8	위임자 (세대주)
9	뒷면의 서약·동의사항을 확인하고 서약·동의합니다. 본 신청서 내용과 상위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반드시 서명해 주십시오.
10	기입예
11	2024년 6월 3일 시점의 세대 전 구성원(세대주 이외)을 기입해 주십시오.
12	대리인 (세대주 이외 분)이 신청 시에만 기입
13	반드시 세대주(신청자)가 서명해 주십시오.
14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7만 엔) 또는 균등할만 과세 세대(10만 엔)를 대상으로 하는 급부금에 대해서 교토시 및 교토시 이외 지자체 급부 대상이었던 세대와 동일 세대 및 해당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는 2024년도 교토시 생활응원급부금(비과세·균등할만 과세)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15	은행계좌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통장·현금카드 등)의 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16	대리 신청·수급의 경우 ※ 위임자 및 대리인 쌍방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17	본인확인서류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18	서약·동의사항 ①2024년도 교토시 생활응원급부금(비과세·균등할만 과세)(이하 ‘급부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 급부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급부금에 따른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세대를 위한 급부금】 ·2024년 6월 3일 시점의 2024년도분 주민세가 비과세인 세대일 것. 【균등할만 과세 세대를 위한 급부금】

	<p>·2024 년 6 월 3 일 시점의 2024 년도분 주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균등할만 과세자(소득할은 비과세)만의 세대’ 또는 ‘균등할만 과세자와 비과세자 세대’)일 것.</p> <p>【비과세 세대 및 균등할만 과세 세대 공통】</p> <p>·세대 중에 주민세 과세소득이 있음에도 미신고 중인 사람이 없을 것.</p> <p>·2023 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7 만 엔) 또는 균등할만 과세 세대(10 만 엔)를 대상으로 하는 급부금에 대해서 교토시 및 교토시 이외 지자체 급부 대상이었던 세대와 동일 세대 및 해당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가 아닐 것.</p> <p>·주민세 비과세 세대 또는 균등할만 과세 세대에 대한 2024 년도 10 만 엔 급부금(※)을 교토시 이외 지자체에서 수급하고 있지 않을 것.</p> <p>※ 지자체에 따라 급부액이 다를 수 있음.</p> <p>·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된 자의 부양친족만으로 구성되는 세대가 아닐 것.</p> <p><사례></p> <p>부모(과세자)의 부양을 받는 대학생(비과세) 등 단신 세대나, 자녀(과세자)의 부양을 받는 부모 세대(비과세) 등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p> <p>②급부금 지급 요건의 해당성 등을 심사 등 하는 데 필요한 이전 주소지에서의 급부금 수급 여부, 주민기본대장 정보 및 세금정보 등의 공적 장부 등의 확인 또는 자료 제공을 교토시가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③공적 장부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p> <p>④교토시에서 지급을 결정한 후 본 신청서는 급부금 청구서로 취급합니다.</p> <p>⑤신청서 겸 청구서 미비로 인한 입금불능 등의 사유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채 2024 년 10 월 31 일까지 미비가 보완되지 않으면 급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p> <p>⑥①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 수급하거나 본 급부금 수급 후에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수입·소득 등의 수정신고로 2024 년도 주민세 과세 세대로 변경 등)는 급부금을 반환합니다.</p> <p>자녀 가산 주의사항</p> <p>상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자녀 가산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 신청서와는 별도로 ‘2024 년도 교토시 생활응원급부금(자녀 가산) 신청서 겸 청구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앞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4 년 6 월 3 일 시점에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 세 이하의 자녀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필요 없음)</p> <p>①다른 세대에 속하는 18 세 이하의 자녀(2006 년 4 월 2 일 이후 출생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p> <p>②2024 년 6 월 4 일 이후에 시외로 전출하여 전출지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을 경우</p>
19	(본 신청서)
20	‘신청·청구서(세대주) 본인확인서류(사본)’
21	수취계좌가 확인 가능한 서류(사본)
22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사본)’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성을 알 수 있는 서류’
23	‘2024 년도 주민세 비과세 증명서(사본)’

2 4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일본에 주민등록이 없어 비과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분은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해 주십시오.
2 5	외국 국적자: '비자 사본'(상륙허가일을 알 수 있는 것)
2 6	'2024년도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증명서(사본)'
2 7	※첨부 서류에 미비는 없습니까?(첨부 서류에 미비가 있으면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